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0. 11. 21.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수정의 주요골자

- 제2조의 2에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하여 명확히 함.
- 제3조에서 제반시책 수립과 시행을 “할 수도 있고”는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수립 시행하고”로 수정함.
- 제7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설사업, 개발계획수립으로 한정함은 건설, 개발이외의 사안이 발생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기본방향과 관리계획에서 포괄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으로 수정하고, 제6항에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함.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의)의 2중 품치보존등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역을 말한다.
를 품치보존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지역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중 제반시책 “수립과 시행을 할 수 있고”를 제
반시책 “을 수립 시행하고”로 한다.

안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항 중 “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
계획 수립시”를 삭제한다.

안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항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를 규칙으로 “정 한다”로 한다.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사찰이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품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품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통사찰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변지역을 유지·보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항상 잘 보전된 주변지역과 접하여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변지역 보호

제6조(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 ① 주변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2.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3. 전통사찰의 수행·포교환경 침해 방지
4.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 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변지역의 경관적 가치 및 관리 방안
3. 주변지역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변지역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시계가 방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변지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3.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과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주변지역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 및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 전통사찰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풍치보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을 <u>유지 할 수 있는</u>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을 <u>위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u>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 <u>수립과 시행을 할 수도 있고,</u> 전통사찰과 -----	제3조 (시장의 책무)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 <u>을 수립 시행 하고,</u> 전통사찰과 -----
제 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u>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시</u>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	제 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u>삭</u> <u>제</u>)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
제 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⑥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u>정할 수 있다.</u>	제 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⑥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u>정한다.</u>